

전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104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성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7. 14.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5593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익산시 C 답 2,334㎡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2.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1. 6. 접수 제996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급여환수금 채권의 존재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1. 28. B에게 퇴직일시금으로 65,050,1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이 1999. 8. 25.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9. 22.경 B에게 ‘급여환수원금 32,525,060원, 2016. 10. 21.까지 계산된 연체료 81,444,877원 합계 113,969,937원’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B에게 기지급한 퇴직급여 중 일부를 환수할 권리가 있고, 원고의 위 급여환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퇴직급여액의 감액사유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열거하면서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운전 중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환수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위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5헌바33)하면서도 위 조항은 2008. 12. 31.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전에 개정된 다수의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도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퇴직급여의 지급 및 환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사유인 B의 의원면직일 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급여환수금 채권의 시효 소멸 및 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

가) 피고는 원고의 급여환수금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급여환수금 채권은 공무원연금법상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는데[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원고는 위 채권이 발생한 1999. 8. 25.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환수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므로, B가 채무승인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9호증의 5,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E은 2011. 3. 3. B의 집을 방문하여 환수금과 관련한 면담을 하였는데, B는 ‘몸이 아프고 남편인 피고(현재 익산시청)의 봉급으로 생활을 하는 중으로 향후 4년 이상 힘들 거 같고, 추후 가능성이 보이면 연락을 한다’고 말한 사실, 원고는 2016. 2. 24.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B의 F증권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2016. 3. 2. F증권으로부터 1,396,91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급여환수금 채권은 위 체납처분을 실시할 당시 이미 시효 소멸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라 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가 문제되고, B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는 환수금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결국 원고의 나머지 재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직원 E는 2011. 3. 3. B의 집을 방문하여 환수금과 관련한 면담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급여환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B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원고가 2016. 3. 2.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B의 F증권에 대한 예금채권인 1,396,913원을 지급받았고, B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70 판결 등을 들면서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일부 변제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70 판결 등의 사건은 채무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로서, B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 사건과는 달라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B의 무자력

제1심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를 과세받은 적이 없고, 원고에 대한 급여환수금 채무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이다.

다. 사해행위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장인인 G가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 주기로 했으나 G가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증여를 하기에는 증여세 등의 부담이 있어 딸인 B에게 상속을 하게 한 후 절세를 하고자 B가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다3999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B와 피고는 부부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1. 6. 접수 제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취소 및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